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6서식] <개정 2025. 2. 18.>

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·기재사항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
신청인	법인명(단체명)		법인(사업자)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연락처(전화번호)			
소재지				
설립근거				
설립목적				
설립 연월일				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8제2항 및 제56조의9제1항에 따라
- []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- []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.
- []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지정	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7 및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·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튜닝부품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.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. 자원조달계획 다.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. 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	수수료 없음
	기재사항 변경	1.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2.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
	재발급	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(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 3.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국토교통부		국토교통부		국토교통부		국토교통부